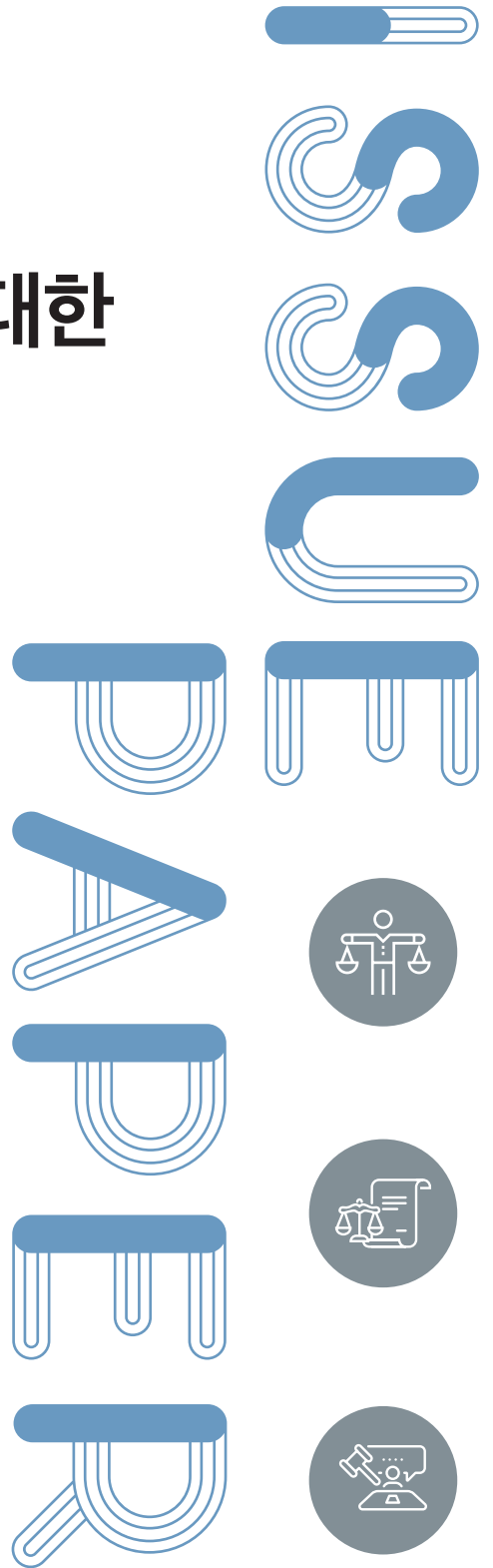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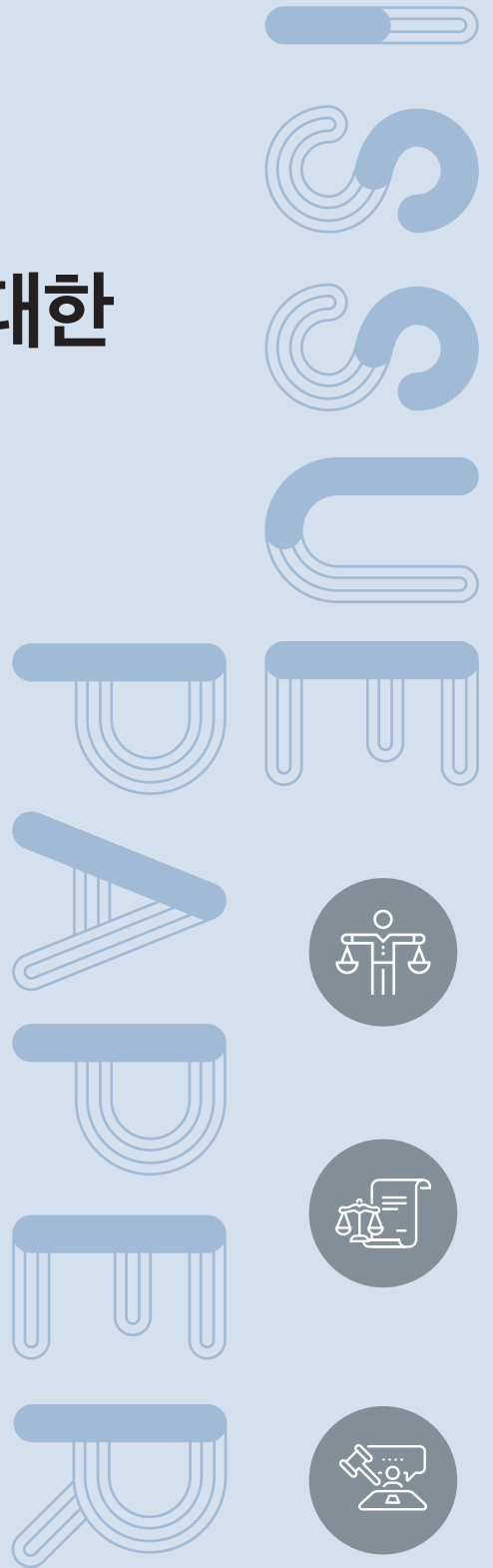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정상우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CONTENTS

ISSUE
PAPER

요약문

5p

서론

Chapter

1

- 11 1. 입법평가의 배경
- 12 2. 입법평가의 필요성
- 12 3. 입법평가의 목적
- 13 4. 입법평가의 방법

10p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논의의 배경 및 중요성

Chapter

2

- 15 1. 재외동포 현황
- 16 2. 재외동포 보호의 헌법적 근거
- 18 3. 재외동포의 현지적응 및 모국기여 지원
- 18 4. 재외동포의 인권 보장
- 19 5.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
- 20 6. 재외동포정책의 체계화 및 사회통합

14p

재외동포 관련 법제의 체계 분석

Chapter

3

- 22 1. 개요
- 24 2. 세계화 시기 이전
- 26 3. 세계화 시기
- 28 4. 이민·다문화 시기

21p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제안 경과

Chapter

4

- 32 1. 제19대 국회
- 35 2. 제20대 국회
- 37 3. 제21대 국회

31p

관계자 의견

Chapter

5

- 45 1. 한인단체 입장
- 46 2. 부정적 의견
(김경협 의원안 검토보고서)

44p

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평가

Chapter

6

- 48 1. 기본법 제정 필요성 평가
- 49 2. 재외동포의 개념의 체계 정당성
- 51 3. 인권 증진 여부
- 52 4.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
- 52 5.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와 재외동포 권익 증진
- 53 6. 전담부서의 설치

47p

결론

Chapter

7

- 57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58 2. 기본법 제정안 대안

56p

참고문헌

59p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정상우¹⁾

요약문

1. 서론

1) 입법평가의 배경

- 현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5건 발의되어 있고(5건 법안에 대해 총 5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의), 새정부에서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재외동포는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2) 입법평가의 목적

-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 가능한 재외동포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입법노력, 쟁점 사항들을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3) 입법평가의 방법

-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재외동포 법제의 체계성,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검토함.

1) 인하대학교 교수

- 재외동포기본법의 체계정당성, 헌법적 근거, 해외동포 권익 신장 가능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실성 있는 입법 사항에 대해 도출하고자 함.

2.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 검토

1) 재외동포 현황

-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3,622명으로,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증가하고 있는 바,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사회통합정책으로 편입 필요성 및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교육 및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2) 헌법적 근거

- 헌법 전문에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재외동포 지원

- 재외동포가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4) 재외동포 인권 보장

-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취급, 국가에 의한 반강제적 이주가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들이 과거 경험했던 인권 침해적 상황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로써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5) 재외동포정책의 체계화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3. 재외동포 관련 법체계의 발전

1) 제1기: 세계화 시기 이전: 국적법 및 해외이주법 시기

- 정부수립 이후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이 1949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 출입국 또는 이주와 관련된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등이 제정되었음.

2) 제2기: 세계화 시기

- 재외동포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법(1997)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제정시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음.

3) 제3기: 이민·다문화시기

- 제3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 현상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시기임.
- 재외국민의 교육권, 선거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고려인동포 또는 사할린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지가 강화된 시기임.

4.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현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은 명칭이 다소 다르지만 전해철, 안민석, 서일준, 김석기, 양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5건이 심의 중에 있음.
- 입법 목적, 정책의 기본 방향, 국제법 및 조약의 준수,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 기본계획 수립 등은 법안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재외동포의 정의에 있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한 법안과 재외국민과 외국 거주 한민족 혈통으로 구분한 법안으로 나뉨.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법안,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안으로 나뉨.
-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의 신설, 차별금지, 국내정착지원, 참정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5. 쟁점과 입법 대안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헌법 전문에서 “민족의 단결”을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적 또는 출입국관리의 시각이 아닌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재외동포의 개념

- 재외동포재단법에 규정된 정의와 같이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첫째, 기본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엄격히 구별할 이유는 크지 않고(예외: 선거권), 둘째, 재외동포정책 적용 범위를 가급적 넓게 잡음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셋째, 재외동포청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주권의 침해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3) 인권 증진

- 재외동포들의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출입국 및 체류 지원, 모국으로의 귀환 또는 국내정착 보장,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영사조력,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

-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 나아가 국민의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음.

5)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와 재외동포 권익 증진

- 재외동포의 활용 또는 모국에 대한 기여 지원, 모국에서의 사회통합, 해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의 특성, 세대에 따른 특성, 이주의 원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6) 전담 부서의 설치 여부

- 재외동포 정책의 복잡성과 소관부처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 설립은 기본법 제정과 무관하게 장기적 과제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되 재외동포정책의 관련 부처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고려함.

Chapter



서론

11	1. 입법평가의 배경
12	2. 입법평가의 필요성
12	3. 입법평가의 목적
13	4. 입법평가의 방법

1. 입법평가의 배경

-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이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정부수립 이후 이주가 본격화되어 현재 재외동포가 약 7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주정책이나 재외동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상당히 늦어졌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재외동포 정책이 체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정책의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법체계 정비가 느리게 정비되어 온 형편임.
-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1996년 설치되었으나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임.
- 「재외동포재단법」이 1997년 제정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이 1999년 제정된 이후로 재외동포 관련 법제에 큰 변화가 없었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노력은 제15대 국회 이후 제기되기 시작하였는 바, 제15대 국회인 1997년 2건, 제16대 국회에서 1건, 제17대 국회에서 1건, 제19대 국회에서 1건, 제20대 국회에서 2건 등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이 5건 발의되어 있고, 새정부에서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재외동포는 이른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전자는 국민이고 후자는 외국인으로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바, 근대국가에서 국민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법체계에 양자를 동시에 규율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정당성과 법적 개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들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입법방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여 입법 이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음.

2. 입법평가의 필요성

-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범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 및 조율을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 정책을 구현하고 재외동포 지원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재단의 2022년 예산은 707억 원 이상임.
- 재외동포는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제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 3건, 재외국민기본법안 1건, 재외동포보호법안 등 총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표 1> 참조), 해당 법안에 동의한 의원만도 54인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된 5개의 법안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1> 제15대 국회 이후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3317	재외동포보호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2021-11-15		
2112659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석기의원등10인)	2021-09-24		
2110320	재외국민기본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2021-05-24		
2105240	재외동포기본법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2020-11-12		
2104882	재외동포기본법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2020-11-03		
2023422	재외동포기본법안 (이인영의원 등 15인)	2019-10-31	2020-05-29	임기만료폐기
2005436	재외동포기본법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2017-02-06	2020-05-29	임기만료폐기
1916415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2015-08-13	2016-05-29	임기만료폐기
173635	재외동포기본법안 (권영길의원등 31인)	2005-12-16	2008-05-29	임기만료폐기
162266	재외동포기본법안 (조용규의원등 55인)	2003-05-06	2004-05-29	임기만료폐기
150821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원길의원등 12인 외 68인)	1997-10-15	2000-05-29	임기만료폐기
150715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구의원등 25인)	1997-10-15	2000-05-29	임기만료폐기

3. 입법평가의 목적

-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 가능한 재외동포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입법노력, 쟁점 사항들을 분석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 내용을 도출하고자 함.

4. 입법평가의 방법

- 기본법 제정 논의의 배경과 중요성을 살펴봄으로써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을 규명함.
-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재외동포 법제의 체계성,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검토함.
- 최근까지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들을 검토하고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재외동포기본법안들을 비교분석함.
- 재외동포기본법의 체계정당성, 헌법적 근거, 해외동포 권익 신장 가능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실성 있는 입법 사항에 대해 도출하고자 함.

Chapter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논의의 배경 및 중요성

- 15 1. 재외동포 현황
 - 16 2. 재외동포 보호의 헌법적 근거
 - 18 3. 재외동포의 현지적응 및
모국기여 지원
 - 18 4. 재외동포의 인권 보장
 - 19 5.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
 - 20 6. 재외동포정책의 체계화 및 사회통합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논의의 배경 및 중요성

1. 재외동포 현황

-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2021년 현재 180개국에 약 7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²⁾
 -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511,521명, 외국국적동포는 4,813,622명으로, 180개국에 총 7,325,143명의 재외동포가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음.
 - 이는 2년 전인 2018년 12월 기준 동포 규모(7,493,587명)와 비교할 때 2.2%(168,444명) 감소한 수치임.
 -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재외국민 수가 직전 통계 대비 6.53%(175,59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학생 수가 293,157명에서 171,343명으로 41.55%(121,8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2,633,777명), 중국(2,350,422명), 일본(818,865명), 캐나다(237,364명), 우즈베키스탄(175,865명), 러시아(168,526명), 호주(158,103명), 베트남(156,330명), 카자흐스탄(109,495명)으로 파악되고 있음(<표 3> 참조).

<표 2> 해외동포 거주자격별 현황

구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명)	1,018,045	1,322,133	171,343	2,511,521	4,813,622
증감(명)	-13,737	-40,042	-121,814	-175,593	7,149
증감률(%)	-1.33	-2.94	-41.55	-6.53	0.15

출처: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2)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2021 및 외교부 보도자료, 2021년 12월 24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440>

<표 3> 해외동포 지역별 현황

구분	동북아	남아태	북미	중남미	유럽	아중동
총계(명) (백분율(%))	3,169,287 (43.27)	489,420 (6.68)	2,871,141 (39.20)	90,289 (1.23)	677,156 (9.24)	27,850 (0.38)
증감(명)	-117,076	-103,021	82,409	-13,328	-9,903	-7,525
증감률(%)	-3.56	-17.39	2.96	-12.86	-1.44	-21.27

출처: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증가하고 있는 바, 법무부 통계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재외동포 현황에 대한 최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³⁾
 - 2021년 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011,259명이며, 동포는 797,525명으로서 체류 외국인 대비 39.5%를 차지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F-4) 469,619명, 방문취업(H-2) 143,399명, 영주(F-5) 108,448명, 방문·동거(F-1) 45,562명 등임.
 - 국적별로는 중국 649,603명으로 전체 체류동포의 81.5%를 차지하고, 미국 43,847명(5.5%), 우즈베키스탄 31,648명(4.8%), 러시아 26,679명(3.3%) 등의 순서로 체류하고 있는 바, 국내 체류 동포 중 중국 및 구소련 동포의 국내 체류가 급증하고 있음.
 - 80만여 명의 한국 체류 동포 중 12만여 명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업 등의 38개 단순노무업종에 취업 중임.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F-4) 및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 정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 체류 동포의 한국 체류 규모가 팽창하고 체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사회통합정책으로의 편입 필요성 및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교육 및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2. 재외동포 보호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전문

- 헌법 전문에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의 “대한국민”과 “민족”은 헌법제정권력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대 국민국가에서 국민과 민족은 서로 다른 개념임.
 -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일제강점기 하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과 같은 헌법제정권력임을 나타냄으로써

3) 광재석,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와 통합』 제14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2021, 20쪽.

-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에 기반한 국가의 발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 헌법 전문에 나타난 “민족의 단결”이 현대적 의미로 이른바 초국가적 민족을 의미하거나 헌법 제정 당시 디아스포라 인게이지먼트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의 이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 헌법제정권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현인 것으로 생각됨.
 - 헌법상 민족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원리로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민족에 대한 헌법의 확장, 민족 구성원 사이의 평등 보장, 민족의 정체성 유지, 민족 단위의 국가 형성과 유지 및 발전 등을 민족국가원리의 내용으로 제안하기도 함.⁵⁾

2) 재외국민 보호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외국의 영주허가를 가지거나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함.
 - 이에 대해 해외동포란 일상적으로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률상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됨.
 - 재외국민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공동체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며, 외국인인 재외동포는 제외하기 위한 용어라고 할 수 있음.
 - 재외국민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선거권이 오랜 기간 보장되지 못한 점, 한-베 자녀 보호의 미흡, 재외국민 교육의 사각지대 등 재외국민 보호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음.
- 최근에 재외국민 교육과 영사조력에 대한 입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전까지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은 재외동포에게 단순한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그들을 보호대상이나 권익증진 노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외국민 이외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귀환이나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주의 역사가 반강제적이거나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3) 문화국가의 원리

-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4) 이철우, “재외동포정책과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유럽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유럽학회, 2019.

5)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있음.

- 민족문화라는 용어에 대해 전통문화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민족문화를 국수주의적 또는 배타주의적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며, 문화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민족은 문화적 통합의 기반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의 근간이 되고 통일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음.
- 민족국가원리를 인정할 경우 민족이 문화공동체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문화교류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임.

3. 재외동포의 현지적응 및 모국기여 지원

- 우리나라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은 원칙적으로 현지적응을 우선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재외동포의 현지적응이 성공적인 경우에도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법 역시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있어 재외동포재단법은 현지 정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재외동포법은 국내 체류 지원에 상대적으로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면서 해외동포의 한국 발전 기여에 대한 정책적 전환점을 이루었고, 이후 관련 법률들도 현지적응과 모국기여라는 두 원칙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현지적응과 모국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를 이루는 법제가 되고 법률해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명될 필요가 있음.

4. 재외동포의 인권 보장

- 헌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명시적 규정이 있고 재외국민의 경우 최근 선거권, 교육권 등이 확대 보장되고 있으나, 외국인인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 보장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외국인인 재외동포의 경우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외국국적동포의 인권이 사각지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지점임.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취급, 국가에 의한 반강제적 이주가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이들이 과거 경험했던 인권 침해적 상황들에 대한 회복적 조치로써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법상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허가, 인지 등이 있으나,⁶⁾ 이른바 ‘모국귀환권’에 대한 적극적 규정이 부재함.⁷⁾
 -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4항은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모국귀환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대한민국도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1948.5.11.)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정부수립 이후 제정 국적법(1948.12.20.)에서는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국민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동포 1세대와 2세대에 대해 한국으로의 귀환을 긍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음.

5.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평등 보장

-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권 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로서 누리는 권익은 외국인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토지거래, 금융거래, 사회복지혜택 등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동포들이 외국인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음.
- 재외동포법은 본래 조선족과 고려인은 제외하는 차별적 의도를 갖고 있었음.
 -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 해외동포를 불포함했었는데 이는 사실상 조선족과 고려인을 제외하려는 의도였던 것임.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동포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이러한 취지는 재외동포 정책 운영 과정에 남아 있음.
- 출신국가별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은 재외동포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철폐 및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국내체류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간의 차별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음.

6)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에 관한 업무처리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법무부예규) 참조.

7) 최경욱,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통일인문학』 제66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6. 재외동포정책의 체계화 및 사회통합

- 재외동포에 대한 파편화된 입법과 정책으로 재외동포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음.
- 근대국가 또는 국제법체계를 고려한다면 이중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겠으나,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외동포는 권익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현재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였지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청이 재외동포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음.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진전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교정만 이루어지고 있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않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들에 대해 현재 2020. 9. 21. 2016헌마889 결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기를 지나 이민·다문화 시기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재외동포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주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 재외동포는 오히려 한국사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포섭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체계화하고 국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Chapter

3



재외동포 관련 법제의 체계 분석

22	1. 개요
24	2. 세계화 시기 이전
26	3. 세계화 시기
28	4. 이민·다문화 시기

재외동포 관련 법제의 체계 분석

1. 개요

1) 제1기: 세계화 시기 이전: 국적법 및 해외이주법 시기

- 제1기는 시기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화 이전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1971년 약 70만 명이던 재외동포는 1976년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1986년 200만 명을 넘어서 1990년 232만 명에 이르렀다가,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가 늘어나면서 1991년 483만 명, 1995년 522만 명으로 급증하였음.⁸⁾
- 정부수립 이후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위한 재외국민등록법이 1949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1960년대 출입국 또는 이주와 관련된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등이 제정되었음.
- 재외동포에 관한 암묵적 관리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1970년대 교민청 신설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⁹⁾

2) 제2기: 세계화 시기

- 세계화에 따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이 빈번해지고 모국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진 시기로 정부에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지원을 위해 법제를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종폭동을 계기로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음.

8) 출처: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82&stts_cd=168201&freq=R

9) 이철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가지 방식-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이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김영삼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출입국법이 제정됨.
- 이 당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중국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이중국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 못해 출입국과 한국에서의 체류 및 경제활동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임.
- 재외동포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재단법(1997)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을 제정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제정 시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음.
- 재외동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으나 차별적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었음.

3) 제3기: 이민·다문화시기

- 제3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사회 현상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권, 선거권 보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고려인동포 또는 사할린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지가 강화된 시기임.

4) 정리

- 각 시기마다 재외동포 관련 입법에 일정한 흐름이 있었던 바, 제1기는 재외동포 관리에 대한 무관심 또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법제, 제2기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출입국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제3기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제 정비의 특징을 보임.
- 이상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의 흐름을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음.

<표 4> 재외동포 관련 입법의 흐름

시기	관련 법령	부처	성격
제1기	국적법(1948)	법무부	일반
	재외국민등록법(1949)	외교부	이주
	여권법(1961)	외교부	출입국
	해외이주법(1962)	외교부	이주
	출입국관리법(1963)	법무부	출입국
	재외공관공증법(1963)	외교부	재외공관
	재외국민가족관계법(구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1967)	법무부	가족관계(호적)

시기	관련 법령	부처	성격
제2기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1996)	외교부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법무부	재외동포
	재외동포재단법(1997)	외교부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	고용노동부	일반(재외동포 특례)
제3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교육부	재외국민
	공직선거법(2007 헌법불합치)		재외국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	외교부	고려인동포 특별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	외교부	재외국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외교부	고려인동포 특별법(영주귀국)

2. 세계화 시기 이전¹⁰⁾

1) 국적법

- 제정: [시행 1948. 12. 20.]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 목적: 이 법은 헌법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정 당시 부계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 부부공동국적주의 등을 취하였으나,¹¹⁾ 현재는 부모양계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복수국적 예외 허용),¹²⁾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 등을 취함.
- 재외국민의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함.

2) 재외국민등록법

- 제정: [시행 1949. 11. 24.] [법률 제70호, 1949. 11. 24., 제정]
- 목적: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
- 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동법 제2조).

10) 이하 법률에 제정 목적 또는 제정 이유에 대한 소개는 법저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자료에 따름.

11)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혼인한 여성의 독자적 국적선택권을 보장함.

12)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에서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3) 여권법

- 제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0호, 1961. 12. 31., 제정]
- 목적: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해외이주법

- 제정: [시행 1962. 3. 9.] [법률 제1030호, 1962. 3. 9., 제정]
- 목적: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제정 당시) → 해외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이주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1999년 전문개정).

5) 출입국관리법

- 제정: [시행 1963. 3. 5.] [법률 제1289호, 1963. 3. 5., 제정]
- 목적: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船員을 제외한다. 이하 國民이라 한다)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 및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제정 당시).

6) 재외공관공증법

- 제정: [시행 1964. 1. 7.] [법률 제1479호, 1963. 12. 7., 제정]
- 목적: 공증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약칭: 재외국민가족관계법)

- 제정: 재외국민취적에관한임시특례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65호, 1967. 1. 16., 제정]
- 목적: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3. 세계화 시기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 제정: [시행 1996. 2. 29.] [대통령훈령 제63호, 1996. 2. 29., 제정]
- 목적: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 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제정 당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다가 2021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옮김.
-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심의·조정 사항은 i)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ii)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iii)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iv)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v) 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vi)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vii) 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viii) 그 밖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임.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17호, 2020. 2. 4., 일부개정]
- 목적: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제정 이유: i)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여 재외동포에게 모국의 국경 문턱을 낮춤으로써 재외동포의 생활권을 광역화·국제화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의 국제화·세계화를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취득·금융·외국환거래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모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회생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ii)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병역, 납세, 외교관계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적 일체감 저해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중국적 허용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iii)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한 동포 중 상당수가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고립감과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제약, 연금지급 정지 등을 걱정하여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꺼리고 거주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정착하여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라고 규정하여 정부의 책무 규정을 둠.
- 이 법률 제정 당시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결정함.¹³⁾

3) 재외동포재단법

- 제정: [시행 1997. 4. 28.] [법률 제5313호, 1997. 3. 27., 제정]
- 목적: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정 이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안에서 한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¹⁴⁾
- 재외동포의 범위: i)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ii)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범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규정되었는데, 이는 재외동포정책의 확대를 위한 것임.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 2004. 8. 17.] [법률 제6967호, 2003. 8. 16., 제정]
- 목적: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
- 제정 이유: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H-2)를 도입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함.

13)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14)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4. 이민·다문화 시기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64호, 2007. 1. 3., 제정]
- 목적: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이유: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2) 공직선거법(2007 헌법불합치)

- 현재 2007. 6. 28. 2004헌마644 등.
- 판결요지 중 일부: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선거의 공정성, 선거기술적 이유 등은 재외국민등록제도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 해외에서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이나 투표자 신분확인제도, 정보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납세나 국방의무와 선거권 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며,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해외로 이주하여 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자발적 계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가 부인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함.

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

- 제정: [시행 2010. 1. 21.] [법률 제10306호, 2010. 5. 20., 제정]
- 목적: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제정이유: 일제의 강제동원 및 항일 독립운동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거주하게 된 50여만 명의 고려인동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문화·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려인동포를 일본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이후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함(법 제2조).
 -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법 제3조).
 -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등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의 고려인동포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 이 법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법 제8조).

4)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19)

- 제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21호, 2019. 1. 15., 제정]
- 목적: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
- 적용 대상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으로 한정함.
- “영사조력”이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함.

5)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0)

- 제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05호, 2020. 5. 26, 제정]
- 목적: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함.
- 제정이유: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으로서,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는바, 그동안 정부의 사할린동포 1세 영주귀국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있었으나, 그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제안 경과

- 32 1. 제19대 국회
 - 35 2. 제20대 국회
 - 37 3. 제21대 국회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제안 경과¹⁵⁾

1. 제19대 국회

1) 김성곤 의원안

● 제안이유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의 정착 및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및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 이 장에 소개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임.

-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재외동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 등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재외동포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는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특징 및 평가**

- 최초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으로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
- 재외동포를 혈통 중심으로 규정하고,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거주국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지원, 참정권 보장, 병역의무 부과에 필요한 노력 규정을 둠.

2) 양창영 의원안

● **제안이유**

- 최근 재외동포의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와의 교류 및 지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의 양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 기대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외교부 및 여러 정부부처가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각각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위가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소속으로 신설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에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의 조직, 직무범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인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도록 함(안 제3조).
-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운영, 재외동포의 지원 및 재외국민 선거 지원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 재외동포청에 정무직인 재외동포청장을 두며, 재외동포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
- 재외동포청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을 두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좌 및 직무 대행을 하도록 함(안 제6조).
-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및 과(課)로 하고, 재외동포청장·차장 또는 국장 밑에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재외동포청에는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정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두고, 임용·교육훈련·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들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 재외동포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특징 및 평가

-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한민족 혈통을 강조함.
- 재외동포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하였음.
-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김성곤 의원안과 유사하고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2. 제20대 국회

1) 김경협 의원안

● 제안이유

- 세계 각지에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정·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재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여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의 정착 및 모국에서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 재외동포의 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 및 한민족의 유대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및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지원,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재외동포청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재외동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 등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재외동포사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 국가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는 재외동포들의 인적 자원을 개발·지원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특징 및 평가**

- 제19대 국회 김성곤 의원안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함.

2) 이인영 의원안

- **제안이유**

- 현행법령은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령상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유지와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및 교육·문화·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특징 및 평가

- 재외동포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함.
-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하지 않음.
-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상세히 규정함.

3. 제21대 국회

1) 전해철 의원안

● 제안이유

-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추진·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2) 안민석 의원안

● 제안이유

- 재외동포는 750만여 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함(안 제11조).

-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서일준 의원안(재외국민기본법안)

● 제안이유

- 현재 193개국에 268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될 만큼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추진·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재외국민정책위원회로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국민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재외국민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국민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국가는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4) 김석기 의원안

● 제안이유

- 세계 각지에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 국가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

5) 양정숙 의원안(재외동포보호법안)

● 제안이유

- 재외동포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임.
- 그동안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GDP 순위 세계 10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바탕에는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알리고 소개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여 국익 증진에 앞장선 공로가 있음.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함에 따라 재외동포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는 재외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법은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주재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외교부장관은 형사절차상의 지원, 재외동포 범죄피해 시의 지원, 재외동포 사망 시의 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지원 등 재외동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재외동포보호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은 재외동포가 부담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6) 법안의 비교 분석

- 5개의 법안 중 서일준 의원안의 제명이 재외국민기본법안, 양정숙 의원안의 제명이 재외동포

보호법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외동포기본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입법 목적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은 대체로 유사하고(양정숙 의원안 제외),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전해철 의원안과 김석기 의원안, 민족적 유대감 유지를 명시한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으로 구별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정의에 있어서는 기존의 재외동포 관련 법제와 유사하게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로 구분한 전해철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과 재외국민 및 외국 거주 한민족 혈통으로 구분한 안민석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으로 구별될 수 있음.
- 정책의 기본 방향은 거주국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함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대체로 유사함.
- 국제사회의 조화를 위해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규정한 것도 5개 법안 모두 동일함.
- 기본계획은 3년 또는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장이 수립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외교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하였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고, 서일준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두었음.
- 김석기 의원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하였음.
- 김석기 의원안은 차별금지, 국내정착지원, 참정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표 5〉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 주요내용 비교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제명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국민기본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보호법안
편제	14개조	14개조	13개조	17개조	23개조
목적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민족적 유대감 유지 및 모법적 거주국 구성원	재외국민정책 기본 사항 규정 민족적 유대감 유지	재외동포정책 기본 사항 규정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민족적 정체성과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유지
재외동포 정의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한민족 혈통 외국거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한민족 혈통 외국거주
재외동포정책	후술	후술	후술	후술	후술
정책 기본방향	거주국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 정체성 함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사회적응 인적자원개발	거의 유사	거의 유사	거의 유사	거의 유사

	전해철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서일준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국제사회와 조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며 재외동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기본계획	외교부장관, 5년마다	외교부장관, 3년마다	외교부장관, 3년마다	재외동포청장, 5년	외교부장관, 5년마다
시행계획					없음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외교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외교부장관 소속(위원은 차관급)
재외공관의 역할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좌동	없음	있음	있음
재외동포정책 수행기관	없음	외교부장관이 지정 (재외동포재단 예정)	없음		
재외동포청	없음	없음	없음	신설(정부조직법)	없음
의견청취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세계한인의 날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없음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10월5일 세계한인주간	
실태조사	○	없음	○	○	있음
차별금지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국내정착지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참정권보장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비고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9개 조문 있음

Chapter

5



관계자 의견

- 45 1. 한인단체 입장
 - 46 2. 부정적 의견
(김경협 의원안 검토보고서)
-

1. 한인단체 입장

- 2022년 2월 90여 개 동포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시민연대는 미리 배포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을 꺼안고 폭넓은 지원을 준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독립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라"고 밝힘.¹⁶⁾
-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면 동포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법적 틀을 갖출 수 있다"며 "국내 동포들 사이에서 지적됐던 재외동포(F-4) 비자 단일화나 방문취업(H-2) 비자 폐지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¹⁷⁾
- 헌법 정신에 부합한 재외동포 정책 추진, 재외동포 정책 국정과제 채택,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처' 설립 등을 인수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종합적·체계적·포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해 동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¹⁸⁾

16) 연합뉴스, 2022년 2월 15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출범"
출처: <https://www.yna.com.kr/view/AKR20220215094400371> (2022년 7월 11일 최종방문)

17) 고대신문, 2022년 3월 27일, "재외동포기본법, 750만 동포 위한 정책의 중심 되다" 출처: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6> (2022년 7월 11일 최종방문)

18) 한국일보, 2022년 3월 25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재외동포청 설립' 촉구"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08092> (2022년 7월 11일 최종방문)

2. 부정적 의견(김경협 의원안 검토보고서)¹⁹⁾

-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 정부부처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칫 우리 정부의 인적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외국국적동포 거주국과의 외교적 마찰 발생 가능성, 외국국적 국내 체류 동포와 여타 재한외국인 간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 재외동포의 출입국·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및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업무(법무부), 재외국민 관련 병역 업무(병무청), 재외국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교육부),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에 관한 업무(고용노동부) 등을 분리하여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기 곤란하고, 업무 이관 시 고유 사무와의 연계성 저하,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행정 비효율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있음.
-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국내정책지원(안 제14조) 등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충돌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있음.
- 외청(外廳)은 국무회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행정각부와 대응한 위치에서의 협의가 어려워 주요 정책 수립·추진에 제약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1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C700X2S0A6D1G4X0U803Q7V9Y2B3

6



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평가

- 48 1. 기본법 제정 필요성 평가
- 49 2. 재외동포의 개념의 체계 정당성
- 51 3. 인권 증진 여부
- 52 4.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
- 52 5.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와
재외동포 권익 증진
- 53 6. 전담부서의 설치



기본법 제정의 쟁점과 평가

1. 기본법 제정 필요성 평가

- 기본법은 형식적 의미로서는 법률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을 지칭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기본법은 주로 국정의 중요분야에서 제도,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천명·지시하는 법률로서 이해되고 있음.²⁰⁾
- 아울러 기본법은 실질에 있어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대체로 기본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정책·대책에 관한 기본방침·원칙·계획·준칙·대강을 명시한 법률 형식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법률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있음.
- 기본법은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 및 추진, 제도·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 국민에 대한 정책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가짐.
- 헌법 전문에서 “민족의 단결”을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에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 관한 국가적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규정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 다만 적용범위에 있어 재외국민에 관한 입법은 국민주권의 원칙상 문제가 될 점이 거의 없으나 외국국적인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것은 헌법의 적용범위, 국가의 3요소 이론 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효적 집행 또는 권리의 부여나 의무의 부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재외동포 보호가 외국과의 외교관계에 관한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세계화 또는 이민·다문화 시기에 국제법상 또는 헌법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20) 이하 기본법의 기본적 의의와 기능 등에 관한 설명은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됨.

-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법 등을 묶는 기본법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성은 인정된다고 생각됨.
-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국적 또는 출입국관리의 시각이 아닌 재외동포의 시각에서 재외동포 정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본법의 성격은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념적 성격을 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계획 수립을 통해 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이 거주국 정부와의 관할권 문제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재외동포정책의 소관 부처가 다양한 반면 이를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나의 부처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재외동포청 설립은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재외동포 개념의 체계 정당성

-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구분하여 재외동포의 범위를 비교적 법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은 한민족의 혈통이라는 다소 법률적이지 않은 개념에 기초하여 규정함.²¹⁾
 - 재외국민에 있어 재외동포법은 영주권 또는 영주목적을 전제로 하였고 재외동포재단법은 장기체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영주목적과 장기체류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기체류자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보다는 재외동포재단법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률인 반면, 후자는 민간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표 6> 재외동포 관련 법제에서 재외동포 개념 비교

구분	규정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21) 최윤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6-7쪽도 같은 취지.

- 근대 국가 수립 이후 국가공동체 구성원은 국적 또는 시민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를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우리 헌법에서도 재외국민과 동포는 구별되는 개념임.
- 현 국회에서 제안된 5건의 재외동포 기본법 관련 법안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다음의 <표 7>과 같음.
 - 재외동포 범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대체로 개념이 명확하고 법안 간에 유사하지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i)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규정하는 경우와 ii) 한민족 혈통으로 크게 구분됨.
 - 한민족 혈통의 경우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표 7> 제21대 국회에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에서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범위 비교

	재외동포 범위	재외동포정책
전해철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나.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정책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 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마.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안민석 의원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서일준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류 사업에 관한 정책 나. 한인(韓人)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정책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에 관한 정책 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마.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국민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신장 등에 관한 정책
김석기 의원안	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 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가. 재외동포의 모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책지원에 관한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모국 국민과의 교육·문화·경제·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합리적 병역의무 수행에 관한 정책 바. 모국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사. 재외동포의 거주국의 재외동포단체 및 모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양정석 의원안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의 정착 및 지위향상을 지원하여,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전통적인 근대 입법 방식과 헌법상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명확화를 위해 재외국민은 국민이고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입법체계와도 부합할 것임.
 -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의 적용은 특별히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다른 법령에서 양자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음.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비추어 재외국민 보호 입법은 법률 체계상 문제가 없음.
 - 국제법적으로도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외교적 보호권 또는 재외국민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영사조력법에 의해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된 바 있음.
 - 이에 반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질적으로 외국인이고 다른 국가의 헌법과 해당 정부의 주권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리 법체계로 보호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법에서도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그럼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재외동포기본법 적용에 있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엄격히 구별할 이유는 크지 않으며(예외: 선거권), 재외동포정책 적용 범위는 가급적 넓게 잡음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포청을 설립하지 않을 경우 주권의 침해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재외동포재단법에 규정된 정의를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3. 인권 증진 여부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시 적용 대상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익 증진이 기대됨.
-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재외동포의 권리나 권익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둔 법안은 사실 김석기 의원안만이지만, 다른 법안들에 의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김석기 의원안의 경우 차별금지, 국내정착지원, 참정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차별금지는 거주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출신 국가별 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국내정착지원은 출입국 편의 제공을 넘어 국내거주 해외동포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참정권 보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행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법안들에 의하더라도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 해외공관의 역할 증대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국가가 보다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경우 체류 국가에 따른 차별적 처우, 교육이나 보건 등에 있어 외국인보다 차별적인 처우가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바, 이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장 큰 문제점은 H-2 비자를 갖는 외국국적동포와 F-4 비자를 갖는 외국국적동포 간의 차별이었고,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권리 보장 범위가 F-4 > H-2 > E-7 > E-9 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차별금지과 국내입국과 활동 지원, 국내정착지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도 기본법 제정은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강제이주 동포, 해외입양 동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미 사할린동포법이 제정되어 있고, 해외입양동포에 대한 특례 규정 설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4.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

-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 정치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재외동포에 대한 입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의 편의 제공, 경제적 투자 유인,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 확대 등 경제적·사회적 편의 제공이 주된 내용이었던 바, 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외동포의 현지에서 적응과 성장은 재외동포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음.
-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 또는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 나아가 국민의 동포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음.

5.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와 재외동포 권익 증진

- 재외동포 관련 법률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지원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지만, 재외동포 가운데 외국국적동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취급되며 예외적으로 출입국의 편의나 간접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음.
- 그럼에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거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법상 모순 또는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재외동포를 우대하거나 이민을 장려하거나 거주국에서의 자립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현 국회에서 제안된 5건의 재외동포 기본법 관련 법안에서 재외동포 정책의 범주는 앞의 <표 7>과 같음.
 - 재외동포정책의 경우 거주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크게 구별되며, 대체로 내용은 비슷하지만 모국에서의 권익 신장을 우선한 경우가 있음(김석기 의원안).
 - 재외동포정책은 법안 가운데 김석기 의원안이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정책 가운데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이중국적을 용이하게 부여하는 것, 한국으로의 귀환 또는 한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것, 출입국을 쉽게 하거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한국 체류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교육 포함), 한국과의 교류 활동에 대해 지원할 것 등임.
 - 이 가운데 앞의 것일수록 직접적이고 외국국적동포의 지위 보장이 확실하지만, 국내법상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이민 정책의 정합성, 국민들의 법 감정과 충돌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택에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차별금지 규정을 필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가 차별없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간 차별,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거주국에 따른 차별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음.

6. 전담부서의 설치

- 전담부서의 설치에 1960년대부터 교민청의 설치를 요청하였을 만큼 필요성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음.
 - 재외동포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업의 확장에 한계가 있고 전시성 사업에 머물고 있는 경향도 나타나며 재외동포의 위상과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은 미흡함.
 - 거주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재외동포청 설치시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재외동포청 설립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주무부처가 외교부이지만, 법무부가 출입국을 담당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동포 교육과 복지에 관한 다수의 업무를 맡고 있음.
 - 재외동포가 국내 체류이든 해외 체류이든 정책대상이 재외동포라는 점은 동일한데, 현재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은 법무부의 업무이고 해외 체류 재외동포 정책은 외교부의 업무라는 성격이 강함.
 - 현재 재외동포 관련 사무의 주요 담당 부처는 <표 8>과 같음.²²⁾

2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20. 11.

<표 8>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무의 담당 부처

담당부처	사무내용
외교부	재외동포정책 수립, 재외동포 육성·지원, 해외 사건·사고 관련 재외국민 보호, 영사관계 문서의 공증·확인, 여권 및 입국 사증 등
법무부	재외동포 출입국, 국내체류시 법적 지위, 국적, 재한외국인정책
교육부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교류사업
통일부	통일정책 관련 교육·홍보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해외취업 지원 및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 관리
보훈처	독립운동 관련 인사 초청·교류 사업
병무청	병역 관리

- 재외동포청 설립시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동포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포사회의 경제적 역량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재외동포정책의 전문성과 예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김석기 의원안에서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최근 법무부에서도 이민·동포청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단일한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으나 관련 부처 간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임.
-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만, 청의 설립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통폐합이 실현 가능해야 하는 바, 현재의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자칫 법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국내 체류와 해외 체류를 구분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하나의 행정조직에서 담당할 경우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담당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한정하여 이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통합부처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
 - 현재는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에서 재외동포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재외동포 사업 중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전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에 업무가 산재 또는 분산되어 있음.
 - 재외동포 정책 역시 크게 재외국민정책과 외국인정책으로 구분되고, 교육, 병역, 복지 등은 개별 부처의 소관사항이므로 하나의 부처에 재외동포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한 외교부에 설치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의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 외에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에 이민·다문화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음.

- 재외동포정책을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재외동포 거주국의 주권 문제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음.²³⁾
- 특히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과정에서 소속 문제로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있음.
 - 외교부에 설치될 경우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 지원에 원활할 수 있으나, 국내 출입국에 관해서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도움이 필수적임.
 -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정책의 일부로 다룰 수 있고 출입국 사무의 소관 부처라는 점이 강점이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규제 중심의 행정 실무 관행으로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무총리 산하에 처로 설치될 경우 여러 부처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집행 기능이 미약할 수 있음.
- 결국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서도 이민청 설립 논의가 실효적이지 못했던 것처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청 설립 논의는 이민청 설립 논의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출입국, 병역, 교육 등은 각 부처의 고유한 행정 업무인 바, 이를 독립된 행정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3) 실제 헝가리가 2001년 6월 「인근국 거주 헝가리인에 관한 법률(Act on Hungarians Living Neighboring Countries)」을 제정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해당 국가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음.

Chapter _____



결론

- 57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58 2. 기본법 제정안 대안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재외동포는 약 7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국내체류외국인 230만여 명 가운데 외국국적동포가 86만 명 가량으로 외국인 가운데 40%에 이르고 있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에 관한 법제가 전환기를 이루고 출입국 및 국내귀환, 해외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다양해졌지만,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주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부족한 실정임.
- 재외동포 정책의 총괄 및 체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은 제15대 국회 임기중이었던 199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다만 현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5건(발의 서명자 50여 명) 제출되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음.
- 현 정부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하고, 재외동포정책으로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분야·세대별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및 투자 지원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해외 입양 동포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5개 법안의 비교 분석 결과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재외동포 실태조사, 국내 정착,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체계화될 수 있을 것임.
 -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신설되고 예산확보가 보다 안정화 될 것임.
 -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사회통합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동포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을 것임.
 - 재외동포를 통한 세계적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임.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 기본법 제정안 대안

- 재외동포기본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재외동포의 범위는 현행 재외동포재단법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는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활동 지원에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둬.
 -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되 재외동포정책의 관련 부처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고려함.
 - 재외동포들의 인권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차별금지, 출입국 및 체류 지원, 모국으로의 귀환 또는 국내 정착 보장,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및 영사조력,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 완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교류 지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의 활용 또는 모국에 대한 기여 지원, 모국에서의 사회통합, 해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거주국에 따른 재외동포의 특성, 세대에 따른 특성, 이주의 원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대가 거듭할수록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재외동포청 신설시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간의 경쟁이 예상되고, 외교부가 담당하더라도 국적, 영주권, 체류는 여전히 법무부 업무이고 법무부가 담당하더라도 해외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외교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재외동포 사무 담당 업무의 통폐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법무부의 이민청 신설 논의와는 독자성을 갖지만, 이민·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
 -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역할과 업무 가운데 위탁사업 또는 민간 영역의 업무는 재외동포청이 흡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외동포 거주국별 차별 금지가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차별 현상이 해소될지 의문임.
 -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입장에서는 기본법 제정으로 복수국적 인정 범위 확대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
 - 거주국가별 요구 사항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 이외에 구체적 규정을 두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 병역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곽재석,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와 통합』 제14권,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2021.
-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외교부, 2021.
- 이철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가지 방식-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이철우, “재외동포정책과 초국가적 민족의 헌법적 정초”, 『유럽연구』 제37권 제4호, 한국유럽학회, 2019.
- 최경옥,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통일인문학』 제66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최윤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방문취업제 적용 외국국적동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허완중,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 웹 페이지 및 기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bill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대신문, 2022년 3월 27일, “재외동포기본법, 750만 동포 위한 정책의 중심 되다”

연합뉴스, 2022년 2월 15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100만인 서명 동포시민연대 출범”

한국일보, 2022년 3월 25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재외동포청 설립” 촉구”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 F. 044. 868. 9913

등록번호 1981. 8. 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 861. 0300 F. 044. 868. 9913

